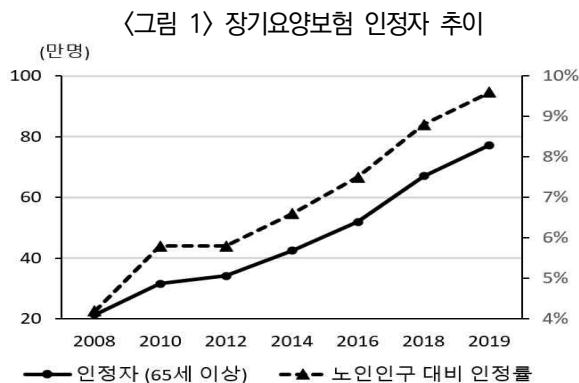


요 약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와 함께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보험의 보장 형태와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영국은 장기간병서비스 수급자도 가입할 수 있는 종신연금 상품을, 미국은 거치형 장기요양특약을 연금에 부가한 장기요양연금을 판매하고 있음. 독일은 세부 분류된 보험급여 내용을 바탕으로 현금과 현물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고령층에 알맞은 장기간병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보험사, 요양서비스 사업자 간 협력과 지원이 요구됨

-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고령층에서 사적보험인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음
 - 2025년에 초고령사회¹⁾ 진입이 예상되고 20년 후면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²⁾
 - 2025년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20.3%에 다다라 초고령사회로 진입함
 - 공적보험인 장기요양보험의 인정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그림 1〉 참조) 사적보험인 장기간병보험의 고령층 가입의향이 높아(〈표 1〉 참조) 소비자의 니즈가 뚜렷함
- 장기요양·간병비용 보장보험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보험보장의 형태와 구성에 다양화가 필요하며, 해외 간병연계 연금보험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각 연도

〈표 1〉 고령층(60세 이상)의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의향

상품	응답 비율(%)	상품	응답 비율(%)
장기간병보험	49.8	모름	21.3
상해·재해보험	20.0	질병보험	18.9
실손의료보험	17.3	연금보험	12.0
사망보장보험	10.5	역모기지보험	8.0
변액보험	5.1	저축성보험	3.2

자료: 생명보험협회(2018), 「제15차 생명보험 성향조사」

1) UN은 초고령사회를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함
 2) 통계청 보도자료(2019. 3. 27),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

- 영국은 장기간병서비스 수급자를 대상으로 종신연금을 보장하는 보험상품(Immediate Care Plan)³⁾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표준하체⁴⁾ 종신연금의 하나로 보험료 대비 보험금 혜택을 높임
 - 일시납인 보험료는 가입자의 나이와 건강상태, 사망률, 장기간병서비스 추정비용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은 즉시 개시되어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에게 지급되고 비용의 나머지는 가입자(서비스 수급자)가 지불함⁵⁾
 - 보험금의 즉시 개시가 필요 없다면 거치식(Deferred) 보험상품을 선택해 보험금 개시를 연기할 수 있음
 -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보통 30일의 보험계약 취소기간을 두고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지만, 취소기간 이후 요양시설이나 요양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중단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철회할 수 없음
 - 현재 우리나라에는 영국의 ICP와 같은 표준하체 ‘종신연금’보험에 대한 보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 미국은 거치형 장기간병특약을 연금상품에 포함하는 장기요양연금(Long Term Care Annuity)을 공급하여 급여 미수령 시 적립금을 환급할 뿐만 아니라 정부는 세제혜택을 통해 비용을 면세 처리하여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수월하게 함(〈표 2〉 참조)⁶⁾
 - 또한 장기요양비용의 충당을 위한 연금인출에 대해 세금부담을 면제해 줄 뿐 아니라 거치기간 중 이자 및 자본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음
 - 가입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사망 시에는 장기간병특약의 적립금 상속이 가능함
 - 장기요양연금의 초회보험료는 2012년 2억 1,000만 달러에서 2018년 5억 7,500만 달러로 두 배가 넘게 증가했음⁷⁾
 - 우리나라의 종신연금상품에도 장기간병연금전환 특약이 있어 연금을 종신으로 수령 중 장기간병 인정 시 연금급여를 증액시켜주는 상품이 있으나 미국의 장기요양연금과 같이 사망 시 적립금 환급(상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예) H생명보험사 장기간병연금전환 특약의 LTC연금액은 종신연금 연금액을 10회(10년) 한도로 지급함

〈표 2〉 미국 장기요양연금의 특징

구분	주요 내용
보험료	- 장기요양과 연금의 혼합형, 전통적 장기요양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일정하여 보험료 증가에 대한 부담이 적음
세제혜택	- 장기요양비용으로 인출하는 연금은 세제혜택(Tax-free Annuity Withdrawals)이 있음 - 2006년 연금법(Pension Protection Act) 도입으로 적격요양비용(Qualified Long Term Care Expenses)을 지불해 주는 연금은 비적격연금상품일지라도 세제혜택이 제공됨
건강요건	- 보험회사마다 다소 조건이 다를 수 있으나, 장기요양연금은 전통적 장기요양보험 상품에 비해 일반적으로 가입 시 건강요건이 까다롭지 않음(easier health underwriting)
기타	- 전통적 장기요양보험 상품과 달리 장기요양연금에 납부된 보험료는 장기요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환급됨

자료: <https://www.ltcinsuranceconsultants.com/long-term-care-annuity/>

3) Immediate Needs Annuity, Long Term Care Annuity, Care Fees Annuity로 불리기도 함
 4) 표준하체 ‘종신연금’보험은 피보험자의 건강상 이유로 기대여명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어 일반 종신연금의 연금급여보다 높은 급여를 수령할 수 있거나 보험료가 저렴함
 5) <https://www.moneyadvice.service.org.uk/en/articles/immediate-needs-annuity>
 6) <https://www.annuity.org/annuities/riders/long-term-care/>
 7) LIMRA(2018), “U.S. Individual Annuity Yearbook 2018 Year in Review”, Part 2

- 독일의 간병연금보험은 현금 또는 현물 형태로 간병서비스 및 비용을 연금의 형태로 제공하며 서비스 상세별로 보장금액이 결정되어 있어 보험 가입자가 장기간병급여에 대한 보험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표 3〉 참조)
 - 우리나라의 경우 현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보험급여 내용에 대한 상세가 부족하여 가입자가 장기 요양 시에 필요한 비용을 가능하기 힘들
 - 확정기간 정액연금(연 1회)의 형태로 의료기기 구입자금을 보험급여로 제공하는 상품이 존재함
 - 생명보험회사가 장기계약에 있어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비용 및 질(Quality)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표 3〉 독일 간병연금보험 요양등급 및 혜택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점수	12.5~27점	~47.5점	~70점	~90점	~100점	
정의	경미한 자립장애	중요한 독립장애	심각한 독립장애	가장 심각한 독립장애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는 가장 심각한 독립 장애	
혜 택	현금급여	-	€316/월	€545/월	€728/월	€901/월
	현물급여	-	€689/월	€1,298/월	€1,612/월	€1,995/월
	주/야간 간호	-	€689/월	€1,298/월	€1,612/월	€1,995/월
	단기간호	-	€1,612/년	€1,612/년	€1,612/년	€1,612/년
	예방관리	-	€1,612/년	€1,612/년	€1,612/년	€1,612/년
	입원치료	-	€770/월	€1,262/월	€1,775/월	€2,005/월
	치료서비스	€125/월	€125/월	€125/월	€125/월	€125/월
	소모품 보조	€40/월	€40/월	€40/월	€40/월	€40/월
	긴급전화	€23/월	€23/월	€23/월	€23/월	€23/월
	주택리모델링	€4,000/총	€4,000/총	€4,000/총	€4,000/총	€4,000/총
	단체주거보조금	€214/월	€214/월	€214/월	€214/월	€214/월

자료: <https://www.pflege.de/pflegekasse-pflegerecht/>

- 영국, 미국, 독일의 간병연계 연금보험 상품 사례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 고령층에 알맞은 장기간병 보험상품 및 보험보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보험회사는 대부분의 고령층을 보험가입 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표준하체 연금상품을 개발 및 활성화하는 등, 현재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에게도 보험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⁸⁾와 일관된 보험내용을 제공해 소비자의 이해를 도와야 할 것임
 - 정부는 보험사에 보험상품 개발과 위험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장기간병비용 보험금의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등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해야 함
 - 요양서비스 사업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도록 허용하는 등 행정처리 및 사무비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8) 노인장기요양보험(<http://www.longtermcare.or.kr/>)의 급여종류 및 내용 참조

높이고, 또한 보험사가 요양서비스를 간접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인지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후기 고령층에게 보험금 청구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됨
-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데이터를 집적하여 향후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과 서비스 개선에 활용해야 함